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 OCIO-DB 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1), 7)	-	-
2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7), 8)	-	-
3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4	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7)	-	-
5	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7), 8)	○	○
6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1), 7), 8)	-	-
7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(분배형)	1), 7), 8)	-	○
8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7), 8)	-	-
9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0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1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2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3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4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5	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6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1), 7)	-	-
17	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7), 8)	-	-
18	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2), 7), 8)	-	-
19	미래에셋로저스 Commodity 인덱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3), 6), 7), 8), 9)	-	-
20	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1), 7), 8)	○	○
21	미래에셋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1), 7), 8)	-	-
22	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7), 8)	○	○
23	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7)	○	○
24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, 8)	○	○
25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7), 8)	○	○
26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, 8)	○	○
27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7), 8)	○	○
28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, 8)	○	○
29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7), 8)	○	○
30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(UH)(주식-파생형)	7), 8)	○	-
31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 ESG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7), 8)	○	○

32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 1 호(H-JPY)(주식)	7), 8)	○	○
33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7), 8)	○	○
34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7), 8)	○	○
35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6 호	7), 8)	○	-
36	미래에셋법인전용 MMF1 호(국공채)	7), 8)	○	○
37	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7), 8)	○	○
38	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 G1 호(주식)	7), 8)	○	○
39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7), 8)	○	○
40	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7), 8)	○	○
41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벤처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7), 8)	○	○
42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G1 호(주식)	7), 8)	○	○
43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K-2 호(주식)	7), 8)	○	○
44	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7), 8)	○	○
45	미래에셋코리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7), 8)	○	○
46	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	7), 8)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2) 지수 관련 변경
- 3) 클래스 명칭 변경
- 4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6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7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8) 대표이사 변경
- 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2월 10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1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
-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
펀드명	변경 전 운용역	변경 후 운용역
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김진하, 이현경, <b>홍사욱</b>	김진하, 이현경, <b>고영서</b>

-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-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
펀드명	변경 전 운용역	변경 후 운용역
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김형우, <b>홍사욱</b>	김형우, <b>고영서</b>

## 2) 지수 관련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 (1) 투자 전략(운용전략 및 투자 방침)	-정기 개편 →매년 6, 12 월 선물옵션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	-정기 개편 →매년 6, 12 월 선물옵션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. <b>단, 신규 상장 또는 물적 분할 등 개별 종목 이벤트 발생 시 특별 변경을 통해 편입·편출 가능</b>

## 3) 클래스 명칭 변경

[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]

변경 전	변경 후
<b>종류 A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]</b>	<b>종류 C[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]</b>
<b>종류 A-e[수수료미징구-온라인]</b>	<b>종류 C-e[수수료미징구-온라인]</b>

## 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<b>2</b>	<b>1</b>	<b>23.78</b>	<b>25.04</b>
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8.63	19.79
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5.93	5.93
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1.26	21.1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69	7.39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3.87	13.14
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9.44	9.47

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7.46	7.55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95	6.82
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9.52	9.58
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 ESG 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2	2	16.62	18.65
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H-JPY)(주식)	3	3	14.18	13.21
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자신탁 1 호(UH)(주식)	3	3	13.33	12.71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자신탁 2 호(주식)	2	2	22.46	23.2
미래에셋법인전용 MMF1 호(국공채)	6	6	0.03	0.05
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6	5	0.41	0.53
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2	2	20.11	19.74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3	3	13.64	14.15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2	2	16.46	15.48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벤처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16.11	16.3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(분배형)	4	4	9.52	9.58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2	2	20.1	19.74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 K-2 호(주식)	2	2	23.48	24.82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23.35	22.85
미래에셋코리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1	1	27.09	26.02

## 6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4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 ②~③ <생략> 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 ②~③ <생략>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

	<p>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	--

7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

8) 대표이사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대표이사>	<u>김미섭</u>	<u>이병성</u>

9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
제53조(고 난도금융투 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 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#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**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**

**1. 경력**

1) 성명: 고영서 팀장

2) 주요 경력

(09 년~12 년)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

(12 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

**2. 운용현황(2021.01.31 현재 공모펀드, 설정액 기준)**

해당사항 없음

**3. 운용성과(2021.01.31 현재 공모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**

해당사항 없음